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5일

3. 제안이유

상위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률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된 상위법률의 제명과 법률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의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다. 현행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상위법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동일하게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라. 상위법률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여,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마.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2023.7.)에 근거하여 현행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 요건을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8조, 안 제10조)
-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의2부터 제18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관계 법률에 근거한 용어 및 조문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함.
또한 위원회의 개최요건을 수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비상설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범위 안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명을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 제명의 변경사항 및 법률상의 용어를 반영하여 규정함.

- 안 제4조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자 상위법 제10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동일하게 5개년 계획으로 변경한 것임.
- 안 제5조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률의 용어 및 조문을 반영하여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내용을 정비한 것임.
- 안 제8조와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에 관한 것으로, 현행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요건을 수정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 것임.
- 그 밖에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예고(‘23. 8. 29. ~ ‘23. 9.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용어 및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변경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